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학생인권 상담 사례 중심

알기 쉬운 인권이야기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목 차

학생인권 상담 사례 중심
알기 쉬운 인권이야기

- 학생인권교육 자료집의 취지와 활용
- 제1장 학생인권의 의미와 보호제도 알아보기 ····· 1
- 제2장 학생인권 사례로 이해하기 ····· 9

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1
Ⅱ.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18
Ⅲ. 교육에 관한 권리 ····· 22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27
Ⅴ.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37
Ⅵ.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42
Ⅶ. 복지에 관한 권리 ····· 44
Ⅷ.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49
Ⅸ.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52
Ⅹ.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 53

학생인권교육 자료집의 취지와 활용

학생은 인권의 존엄한 주체로 존중받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의 자주적 인간상과 서로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삶을 배워 나갈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학생중심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들이 상담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10개의 권리 영역별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며 단순한 사례 열거에 그치지 않고, 학생인권의 의미와 보호의 취지를 알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질문 내용을 그대로 살려 학생인권옹호관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과 보호자들도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장면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여,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고자하였습니다.

이 상담 사례집이 학생인권을 이해하는 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되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1 장

학생인권의 의미와 보호제도 알아보기

제1장 학생인권의 의미와 보호제도 알아보기

'인권'이란?

인권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적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학생인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인권을 누릴 수 있나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을 인권의 주체라고 확인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차원에서 성인과 달리 행동의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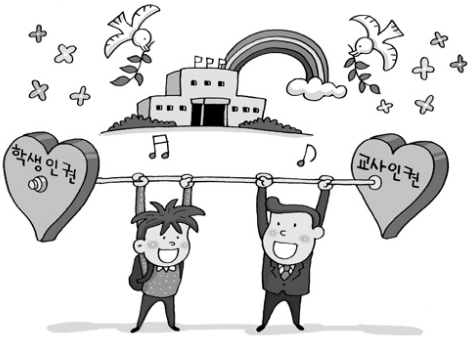

학생인권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경기도교육청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2010년 10월 5일부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두어, 학생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구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칙(제1조~제4조), 학생의 인권(제5조~제27조), 학생인권의 진흥(제28조~제38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39조~제45조), 보칙(제46조~제47조), 부칙으로 총 5장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3명의 학생인권옹호관을 배치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상담과 조사, 구제 활동을 합니다. 학부모, 선생님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구제신청 이용 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1권역 학생인권옹호관실**
- 사 무 실 : 성남교육지원청 2층
- 연 락 처 : Tel.031-780-2694
- 관할지역 : 성남, 수원, 용인, 양평, 이천, 여주, 안성, 평택, 광주하남

□ **2권역 학생인권옹호관실**
- 사 무 실 : 안산교육지원청
- 연 락 처 : Tel.031-412-4573
- 관할지역 : 안산, 시흥, 김포, 부천, 광명, 화성오산, 군포의왕, 안양과천

□ **3권역 학생인권옹호관실**
- 사 무 실 : 의정부교육지원청
- 연 락 처 : Tel.031-820-0192
- 관할지역 : 고양,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의정부,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학생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받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학생의 책무와 의무 】

1) 인권에 대한 학습하기
2)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3)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 존중하기
4)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내 질서 존중하기
5) 교사의 교육과 연구 활동 존중하기

학생안전
조례제정

제2장

학생인권 사례로 이해하기

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1 성별에 의한 차별

동일한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엄중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동일한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지도를 한 것이라면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교육방식은 차별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단순히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또는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우대를 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간에 축구를 할 때 선생님께서 여학생들에게 공을 먼저 양보하고, 남학생은 뒤에 하라고 합니다.

성별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당하게 배려하는 교육까지 차별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여학생들에 비해 적어질 수 있을지라도 운동의 기회가 박탈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별 간의 신체적 발달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교육조치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교육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 성적(成績)에 의한 차별

학교의 최신식 정독실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사용할 수 있고, 기숙사도 성적이 좋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시 위주 교육문화의 병폐로 인해 학교 곳곳에서 여전히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운영하는 정독실과 기숙사는 모든 학생에게 이용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산과 공간의 한계로 인해 모든 학생에게 정독실과 기숙사의 이용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일정한 이용 자격 기준을 두어 정독실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용 자격의 유일한 기준이 성적이라면, 이는 성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회장으로 출마할 수가 없대요.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의 우수 여부와 학생 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품행의 문제는 반드시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성적의 우수 여부를 학생대표의 자격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1-3 가족형태에 의한 차별

- 저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입니다. 오랜 외국생활로 한국음식이 아직 익숙하지 못한데, 친구들이 점심식사에서 김치 먹기를 망설이는 저에게 "김치도 못 먹으니까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놀립니다.
- 부모님 대신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선생님께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의 학생은「학생인권조례」제27조 제1항에 의해 교육영역에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과 조손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나 부당한 차별행위가 없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헌법」에 따라 남에게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는 모든 사적 영역은 누구든지 그 비밀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시기에는 가족 관련 개인정보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상황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은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해당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4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한 차별

임신을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계속 자퇴를 권고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자퇴 강요는 차별행위입니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이며, 임신·출산 학생의 학업 계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임신·출산 학생에 대한 학업 지속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각 시·도교육청 역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의 임신 문제에 대한 윤리적, 교육적 평가에 앞서 임신으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해당 학생에 대한 보호적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5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반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1-6 징계를 이유로 한 차별

교내봉사(지각 누적)로 받은 선도처분 때문에 이번 학기에 반장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이유와 내용, 징계의 정도와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대표 후보 자격을 제한하거나 학생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대표이기에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종전에 받은 징계사실이 현재 학생의 모든 품행을 증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생대표는 다른 학생과 학교를 대표하므로 리더십과 도덕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칙에 학생대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징계사유(학교폭력, 교권침해, 중대한 교칙위반 행위 등)가 있고, 징계를 받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한 경우엔 피선거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Ⅱ.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2-1 체벌 금지

잘못했을 때 선생님께서 꿀밤을 때리고, 지각을 하면 5분에 1대씩 때려요. 그리고 맞고 싶은 부위를 정하라고 해요.

학생에 대한 체벌은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8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1996년 이후 우리 정부에 대해 학교 내 체벌을 법률과 교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생활교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체벌이 아닌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방법이어야 합니다.

2-2 체벌 이외의 징계적 지도

수업 방해를 한다고 방과 후 성찰교실에서 벽을 보고 30분 동안 서 있었던 일도 있고, 수업 중 떠들어서 혼자 한 달 동안 교실 청소를 했어요.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생활교육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아니어서 외견 상 초·중등교육법에 금지된 체벌 행위가 아니라고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하는 경우에 반드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교육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교육적 지도의 명목으로 학생에게 직접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과 유사하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식은 적정한 지도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3 언어폭력

제가 잘못은 했지만, 다른 선생님과 아이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서 혼을 내셨고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까지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혼을 내셨어요.

학교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학생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1헌마827 결정 -

학생들도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엄연한 인격권의 주체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러한 학생지도는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수업시간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정당한 학생지도를 벗어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2-4 학교 내 안전사고

정규수업이 끝나고 체육 동아리 활동 중에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생활 중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생활 과정 중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고로 인해 학생에게 신체적, 심리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내용이 통상 예측할 수 없거나 학교생활과 무관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Ⅲ. 교육에 관한 권리

3-1 수업배제

- 교칙 위반을 이유로 아침 등교 후 5교시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활인권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가 중간고사입니다.
- 선생님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체험학습에서 배제하거나, 방과 후 수업을 못 듣게 한대요.
- 체육수업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원칙상 학생지도 과정에서도 학생의 수업참여권은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수업 외 시간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즉시 조사하는 것이 선도와 교육에 있어 합리적이며, 조사를 위한 다른 시간이나 방법적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 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업 중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2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학교가 끝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사장님은 벌금을 매겨 이를 제외하고 월급을 준다고 해서 억울합니다.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 지불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도한 지각이나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으로 본래 근무해야 할 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 이행 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래 근로계약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정도의 지각을 이유로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한 경우이므로 부당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당 대우 구제 조치 방법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진정 등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형식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구제기관에 알려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부당 대우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장의 ① 주소, ② 연락처, ③ 대표자 이름을 꼭 알아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는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특히, 장기간 노동은 물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 및 휴게시간 등 실제 일한 시간과 근무 중 발생한 사실, 사고 등 해당 일시와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를 통한 인터넷 구제신청(www.moel.go.kr)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알바 Talk', 청소년 모바일 문자 상담(#1388)
- 사업장 내 성희롱·성폭력 :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전화(1388)

3-3 야간자율학습 강제

-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켜요.
- 기숙사 내에서 주말에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공부만 하라고 합니다.

일방적 학습강요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되, 학생의 자기결정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 역시 학교 교육의 한 주체이므로 학교 내 학생의 교육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에 대해 보호자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 여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의 참여 여부'는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학생의 의견을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스스로 의견을 형성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어 참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3-4 휴식권 박탈

- 선생님의 임의적 수업시간 연장으로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안되어서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어요.
- 잘못했을 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중 중요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학생인권조례」제10조 제1항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학생들에게 수업 간 보장된 쉬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어도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등 신체적·정신적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4-1 두발 제한

두발 길이의 제한은 없어졌지만 일정 길이가 되면 무조건 묶어야 합니다.

학생의 두발 문제는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2005년 7월 이후 계속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학생인권조례」 제11조 제2항은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발 길이 규제 외에 염색이나 퍼머 등 학생 간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는 머리 변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정한 절차와 요건 아래 이를 일정 정도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4-2 교복 외 복장 지도

- 여름에 교복 안에 흰색 티셔츠만 입을 수 있어요.
- 겨울에는 외투도 원색 계열의 외투는 입지 못하게 해요.
- 교복 상의를 벗어 두고, 점퍼만 입는 것을 금지 해요.

어른의 시선이 아닌 학생의 시선에서 합리적 복장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복 미착용 등교, 교복 모양이나 머리 모양의 심각한 변형, 실내화 미착용, 지각이나 무단이탈 등 학교 교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지도하여 학교 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학생도 두발과 복장 등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성실현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학교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의 문제에 있어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나 이익, 학교 공동체 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지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이 파란색 면티를 입거나 교복 상의를 안입고 점퍼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나 이익 또는 학교 공동체 질서에 명백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러한 제한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3 일괄적 용모 검사 또는 소지품 검사 강제

- 수업시간에 갑자기 모든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고, 화장품을 압수 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휴지통에 버렸어요.
- 화장실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 없이 주머니를 뒤져서 담배와 라이터를 압수했어요.
- 휴대전화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모든 학생의 가방을 검사했어요.

학생들도 사생활의 비밀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개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시민교육의 취지가 학교에서 연습되고 몸에 익혀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주의를 다해야 할 것이기에, 집단적이거나 일괄적 단속 형태의 학생지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칙에 위반된 행위가 발견되었더라도, 지도 교사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보호자와의 논의 없이 지도 물품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든지 성적수치심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후속적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반드시 교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교칙에 반하는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대상학생이 소지품 검사를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거부행위만으로도 학생 징계 절차에 회부하여 더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되,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표하는 경우 지도불이행이나 위험 물건 검사 불응 등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다른 규정에 따라 선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4 휴대전화 압수

학교에서는 수업 전 휴대전화를 수거함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업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선생님께 적발되었는데 한 달 동안 압수 한다고 합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의 사용과 제한은 반드시 학교 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거나 교칙에 따르지 않고 선생님의 판단만으로 휴대전화를 한 달간 압수하는 것은 학생 개인 물품의 부당한 압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지양해야 합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예절교육을 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제한과 지도가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 교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4-5 수업촬영 및 CCTV촬영

선생님께서 수업을 더 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신다고 수업시간을 촬영한 후 수업태도가 나쁜 학생들을 야단치는 자료로 활용 합니다.

촬영 장비의 사용은 원칙상 그 기기의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구용 촬영 장비는 본래의 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 공지도 없이 교사가 임의로 수업 내용을 촬영하고, 그 녹화영상을 수업 연구가 아닌 학생지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4-6 교복 부착형 명찰

우리 학교는 교복에 명찰이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등 · 하교할 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싫습니다.

이름은 개인 신상정보 중 가장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 즉 성명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중에서도 중요한 기본권이며, 어느 범위까지 혹은 누구에게까지 알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복 위의 고정식 명찰은 원하지 않음에도 이름을 노출시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자기정보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름의 노출로 인해 범죄 피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이후 계속해서 고정식 명찰의 관행을 고칠 것을 권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제2항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정명찰보다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학교 밖에서는 덮개 천으로 이름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학생인권 보호에 부합합니다.

4-7 학생정보 수집과 제공

-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해도 되나요?
-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선생님께서 부모님의 직업과 소득을 적어서 내라고 하셨어요.

학교에서 수집한 개인 신상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을 별개의 조치로 보고, 각각의 행위와 조치 전에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수집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수집하여 놓은 정보라도 수집 당시 또는 수집 이후 정보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이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정보제공 행위나 정보수집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8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공개

학교생활인권규정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지 않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칙 등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대국민 공개대상 정보입니다. 따라서 학교 재학생 여부 또는 보호자 여부를 떠나 홈페이지 등에서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4-9 학생 개인정보 누설

가정폭력으로 인해 비밀전학을 왔는대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버지가 딸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친권자라도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속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가족의 정보를 가해자인 친권자는 물론 모든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친권자가 피해가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학교에 찾아와 지속적인 협박 등으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공개하고 싶지 않은 병력이 있는데 출석부에 기록해서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의 경우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수집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상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 동의를 통해 건강정보를 수집한 경우라면 그 정보의 내용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Ⅴ.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5-1 학교 내 종교 강요

- 교장선생님이 조회시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기도를 하래요.
- 매주 금요일에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불이행하면 처벌을 한데요.

종립학교에서도 학생의 종교선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종립학교는 각 종교의 성격과 특징, 추구하는 목적을 반영하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도 종교교육의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종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의 교육이나 종교활동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판결을 보이면서, 특정 종교활동을 거부한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조치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립학교가 조회 등 비종교적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기도를 종용하는 등의 종교적 의사표시를 강요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모든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5-2 흡연측정 강제 및 흡연지도 규정

- 흡연이 의심스러운 학생에게 흡연측정을 강제로 합니다.
- 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및 전자담배 배터리 소지만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처분을 받았습니다.

■ 흡연검사는 학생징계를 위한 증거수집 행위가 아니라 금연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은 학교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제28조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학교 내에서 금연교육과 금연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징계 위주의 처분이 아니라면, 학교 내 흡연뿐만 아니라 학교 밖 흡연의 문제와 흡연물품의 소지 자체를 금연교육의 대상으로 학교 교칙에 규정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의심스러운 학생에게 흡연측정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에서 금연지도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흡연측정 검사를 학생이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거부행위를 흡연행위에 준용해서 선도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측정을 거부하는 학생에게도 흡연학생과 동일한 금연지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학생의 금연지도를 위한 흡연측정기나 소변검사 키트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검사행위를 단순히 흡연학생의 징벌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학생 대상 금연지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3 반성문 제출 강요

- 반성문 쓰기 싫은데 써야 하나요?
- '다시는 교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학생 생활교육의 방식도 인권적이며 교육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지도 권한에 의해 교사는 학생을 훈계하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기록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반성문 작성 요구는「헌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영역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 대상 학생에게 지도의 이유와 목적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함이 우선입니다. 반성문의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므로 추가적 불이익을 제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5-4 학생 표현의 자유

학교 등교 시간 조정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의 내용을 담은 학생들의 유인물 발간을 교장선생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는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유인물 배포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배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행위는 학생의 인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내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5 학생 의견 표명의 자유

- 학교 밖에서 합법적으로 개최된 청소년 인권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고 징계를 한데요.
-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경쟁적 입시제도 등으로 인한 미래의 불안을 호소하는 내용의 게시물(일명 '안녕들 하십니까?')을 부착했는데, 학교에서 못 붙이게 하고 임의로 제거해버렸습니다.

학생에게도 표현의 자유(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학생들이 미성숙하여 항상 보호받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밝힐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표명된 의견은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비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존중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기회 보장은 원칙적으로 학교 내·외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넓게 보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교육기본법」이 학교교육의 기본 취지를 민주시민교육으로 지향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서 민주주의 시민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벌어진 합법적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Ⅵ. 자치 및 참여의 권리

6-1 학생자치권의 보장

2학기 동안 전체 학생자치회와 학급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어요.

정기적인 학생자치회의 개최와 운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회를 통해 자신들의 복지 개선과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학생 대표들은 이를 토대로 전체 학생을 대표해 학교 측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부합하는 학생자치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자치회를 월1회 이상 정례화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학생회 자치공간의 확보, 학생회 소집 및 운영의 자율권 보장,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자합니다.

6-2 학생에 의한 생활지도

• 학생자치회 임원이 다른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학교 내 학생 생활교육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생지도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지도권을 학생에게 위임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생활교육의 단순 보좌를 넘어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방식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Ⅶ. 복지에 관한 권리

7-1 위기학생 지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 알고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아동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학교 내 학생 보호조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인권 침해의 경우, 그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나 아동보호단체 등과 협의하여 위기학생을 지원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아동을 긴급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하나, 학교폭력의 측면에서는 가해자임이 분명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에 따라 해당학생에게 적합한 선도 및 교육조치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징벌적 선도조치보다는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회복 목적의 선도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2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학교는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고 하면서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아 교실 안이 찜통처럼 덥습니다.

적절한 냉 · 난방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부여된 학교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노후문제나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는 현재의 냉방시설의 한계와 예산 문제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설명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3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학교 방과 후 활동에서 교과 보충을 위한 시간만 남겨 놓고, 체육이나 예능 관련 활동 등은 대부분 폐지했어요.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 활동에서 적정 수준의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학교라는 기관의 본질적 역할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면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7-4 건강에 관한 권리

생리 공결제도가 뭐예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 발달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생리공결제도를 정비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생리로 인한 결석 등이 불이익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학생인권조례」제24조 제2항에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출결이나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학생들이 생리공결제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7-5 건강에 관한 권리

학교에서는 상처가 작다고 보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꾀병이 많다고 한 달 동안 보건실 사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세밀한 관심과 절차에 따른 보호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교육적 합의를 부정하거나 어기는 행동을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성숙을 이유로 학생의 행동 범위를 일방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보건실 이용 등에 있어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지도를 하기 보다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학생의 건강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Ⅷ.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8-1 징계절차에서의 학생권리 보장

- 아무런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내일 학생선도위원회에 참석하래요.
- 학생선도위원회 결과를 전화로 설명하시면서 내일부터 출석정지라고 합니다.
-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교감선생님의 일방적 훈계만 듣고 나왔어요.

선도대상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학생선도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어야합니다. 사전에 통지할 때는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된 사유와 그 후 절차 등을 통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는 충분한 방어권과 항변권을 보장받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학생인권조례」제25조는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2 징계공고

징계 받은 사실이 학교 현관에 게시되었어요.

징계 사실의 공표는 금지됩니다.

'최근 교내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가 발생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상 학생을 특별교육이수 조치 하였습니다.'는 방식으로 게시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이런 공표나 게시행위도 학교 규모 등 특수한 사정으로 대상 학생이 알려질 수 있다면 지양해야 합니다.

8-3 불명확한 징계 사유

학교 교칙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학생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자 친구와 어깨동무만 했을 뿐인데 학교에서는 과도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학처분을 하였습니다.

학생선도 규정은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 교칙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일정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학생 생활교육은 학생들에게 보장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학교에 위임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학생 생활교육도 교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의 내용이 교육목적상 불가피하고 (목적의 정당성), 제한할 경우 학생 참여로 제정된 규칙에 따라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수단의 적정성), 학생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침해의 최소성)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학교교칙의 내용도 불명확 개념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최소한 예측가능한 개념으로 규제하여 학생들의 생활을 교육해야합니다.

따라서 불건전한 이성교제, 학생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 학생의 품행으로 바르지 못한 행위, 교사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등 불확정 개념을 근거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에게 윤리적, 교육적 차원의 지도나 훈계, 징계가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학생의 행위에 비례하는 책임을 인정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을 택하여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IX.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9 청원권 보호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한 학생을 학교에서 찾고 있어서 무섭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26조 제3항은 '학생이 교육청이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인권침해에 관해 상담 또는 권리 구제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학교 측이 구제 신청을 접수한 학생을 찾고 있다는 것만으로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제 신청의 접수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의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비밀보장이란 소극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 등 구제 신청 관련 접수자가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조사대상이 된 학교 측이 구제 신청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X.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10-1 장애학생 괴롭힘

친구들이 자꾸 장애학생 친구를 놀리고 괴롭혀요.

장애학생에 대한 사소한 괴롭힘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 알려야 합니다.

발달장애(자폐장애, 지적장애)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비장애학생에 비해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비장애학생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비해 은폐되거나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유형·정도·특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무관심, 편견 등으로 엄연한 인권침해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친구들 간에 일상적인 장난이나 경미한 사고로 보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학생을 포함한 대다수의 장애학생들은 의사능력의 부족이나 심리적 위축 등의 이유로 친구들의 인권침해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괴롭힘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인식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에게 발생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징후로 보이더라도 가볍게 보아선 안 되며 시정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 즉시 알리도록 합니다.

10-2 장애학생 강제 식사지도

장애학생에 대한 식사지도도 인권침해인가요?

식사지도의 내용과 환경에 대한 객관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편식 개선지도와 같은 식사 습관지도는 장애학생의 발육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하지만 식사 습관지도가 학생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야기하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일반적 교육활동을 넘어 인권침해적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학생의 거부의사가 명백함에도 지속적으로 특정 음식을 먹을 것을 강요하거나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밥을 비벼주거나 말아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인권침해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식 개선지도에 있어서도 장애학생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도가 있은 직후 바로 지도 내용을 알림장이나 유선 상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강압적 지도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는 상담 또는 교육일지에 즉시 기록하고, 학교 관리자의 결재 등을 통해 적정한 지도였음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0-3 장애학생 차별

장애학생이 현장학습을 가려면 보호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학습을 포함한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법 제13조 제3항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편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이 현장학습 등 교외 교육활동에 참여할 것과 그에 따른 보조인력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0-4 운동선수 인권보호

학교에서 코치에게 심한 벌을 받고 있는 운동선수 학생을 보았습니다.

운동이나 훈련을 빙자한 체벌도 모두 금지됩니다.

경기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체벌마저도 관행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운동선수에게도 체벌은 명백히 금지되며, 관행을 이유로 행사된 체벌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가해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 상담 사례 중심

알기 쉬운 인권이야기

지도 위원

- 문병선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 강영남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과장
- 오덕환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관
- 최순옥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관

기획 위원

- 서미향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 강인식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 최항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 김미덕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 김태훈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장학사
- 조선희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주무관

개발 위원

- 김형욱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김민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김태영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김서연 성남교육지원청 학생인권옹호관실 주무관
- 백연화 안산교육지원청 학생인권옹호관실 주무관
- 김신애 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인권옹호관실 주무관
- 박선미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실 전문상담사
- 박인애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실 전문상담사
- 김민정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실 전문상담사

도움

- 제4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

- **발행일** 2015년 2월
- **발행인**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495)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강요하지만,
오늘의 주인으로서 누릴 권리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의무만큼이나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야누슈 코르착의 아이들』 에서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495)
http://www.goe.go.kr